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「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29
----------	-----

2015. 3. 13.(금)  
건설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5년 2월 23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2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3월 3일

(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균형건설국장 조병욱)

가. 제안이유

- 보유 건설기계의 감소로 민간임대와 도급공사 시행이 어렵고 자체 정비공장의 폐지 등에 따라, 주요 규정의 적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」 폐지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고규식)

### 가. 검토내용

-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건설기계는 6종 21대로 민간의 건설기계 보유대수가 많이 증가해 사업소 임대수요는 거의 없으며,
- 그 동안의 임대실적도 미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된 실정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

### 나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」를 검토한 바, 보유 건설기계의 감소로 민간임대와 도급공사 시행이 어렵고 자체 정비공장의 폐지 등에 따라, 주요 규정의 적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」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